

가. 개정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시행 2017.7.26]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구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0.3.13]

등급	자격기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록 2

평생교육 관련과목

가. 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8.2.18 전부개정]

구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 관련과목(구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0.3.31 제정]

구분	종 류	
가. 필수 과목	과목 I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과목 II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나.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참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정, 2000.3.31)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1 가목(과목 I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 중 과목 II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록 3

평생교육사 경력산정표

□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근무유형		경력산정식	
		<1군> 적용 시	<2군> 적용 시
통상근로자 / 전입 교강사 (1주 40시간 근로자)		총 경력기간 × 100%	총 경력기간 × 80%
단시간근로자 / 시간강사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frac{\text{총 경력기간} \times \text{주당 근무(강의)시간}}{40\text{시간(통상근로시간)}} \times 100\%$	$\frac{\text{총 경력기간} \times \text{주당 근무(강의)시간}}{40\text{시간(통상근로시간)}} \times 80\%$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수자 (대학/학점은 행기관)	평생교육 관련 전공 전임교수	총 경력기간 × 100%	-
	타 전공 전임교수 / 시간강사	총 경력기간 × 주당 강의시간* × 10%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	
○ 1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지정·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 기관 ○ 2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1. 경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에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평생교육 관련 업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경력산정시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접수 마감일자를 원칙으로 함. 3. 동일 기간 내 중복된 경력(외부강의 등)은 유리한 경력을 택 1하고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단, '시간강사'의 경우 동일 기간 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함.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간은 1군으로, 그 이외 기간은 2군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5. 대학 강의경력 산정 시 정규학기는 3.5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 6. 휴직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은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므로 실근무 경력에 한하여 산정)			

□ 경력산정 예시

사례	직군	근무유형	경력기간(예시)	경력산정	인정경력
1	1군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총 경력기간 : 36개월	36개월 × 100% = 36개월	36개월
2	2군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총 경력기간 : 24개월	24개월 × 80% = 19.2개월	19.2개월
3	1군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35시간 ○ 총 경력기간 : 12개월	12개월 × 35/40 × 100% = 10.5개월	10.5개월
4	1군	시간강사	A기관 ○ 주당 강의시간 : 10시간 ○ 총 경력기간 : 4개월	4개월 × 10/40 × 100% = 1개월	1.3개월
			B기관 ○ 주당 강의시간 : 4시간 ○ 총 경력기간 : 3개월	3개월 × 4/40 × 100% = 0.3개월	
5	1군	대학 시간강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	1학기 ○ 주당 강의시간 : 3시간	3.5개월 × 3 × 10% = 1.05개월	3.15개월
			2학기 ○ 주당 강의시간 : 6시간	3.5개월 × 6 × 10% = 2.1개월	

□ 평생교육기관 유형

직군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예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예시)	
1군	1. 평생학습전담·지원기구	1-1.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0조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불요
		1-2.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	평생학습관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1-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국가·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교육청에 등록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서, 등록증 등	
	3. 성인문해교육기관	3-1. 문해교육센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3-2.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제39조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3-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평생교육법 제39조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사업 선정공문 등 ※ 사업 선정기간에 한함
	4. 국가·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제15조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사업 전담부서 등	제출 불요	
	5.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지원사업 수행 대학,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사업 선정(운영) 공문 등 ※ 사업 선정(운영)기간에 한함	
	6. 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신고 기관	6-1. 초·중등·대학 부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청 설치 보고 공문 등 교육부 설치 보고 공문, 신고서 등
		6-2. 학교형태	평생교육법 제31조	공민학교, 각종학교 등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 지정서, 등록증
		6-3.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법 제32조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화진화장품 단과대학 등의 사내대학	교육부 인가증
		6-4.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교육부 인가증
		6-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법 제34조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 운동)연합, YMCA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8.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법 제38조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구분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예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예시)	
2군	7.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 제2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육지원청 등록증	
	8. 기관형 교육기관	8-1.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 등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각 개별법령에 따른 설립 근거자료 (법조문, 등록·신고증 등) 및 평생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빙하는 자료 (운영규정, 정관 등)
		8-2. 문화시설기관	도서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8-3.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법 등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8-4. 여성관련시설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문화)회관 등	
		8-5.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8-6.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 등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8-7.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8-8.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등	종합사회복지관 등	
	9. 훈련·연수 형 교육기관	9-1.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9-2.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10.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여성·노인·시민단체, YMCA 등		
	11. 기타	그 밖에 다른 법령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 체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기본 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증명서의 유형 중 ‘특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방문 발급)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1통 당 수수료가 발생됨.
 -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①의 친견·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을 선택·발급함.
-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서류는 발급 받지 않고, ②의 '상세'유형으로 선택· 발급함.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 현재위치정보 : 홈 > 열람 /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신청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input type="text"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	
•성명 *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등록기준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신청내용			
	<input checked="" type="radio"/> 발급	<input type="radio"/> 열람 후 발급	<input type="radio"/> 열람
•증명서 종류 *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친권·후견)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특정)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혼인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value="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발급통수 합계	<input type="text" value="0"/> 통	